

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


## 공정거래위원회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2016년 추석 대비 「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·운영 관련 협조요청

---

1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위원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,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2016.7.25. ~ 2016.9. 13. 기간 동안 『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』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,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『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』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귀 단체는 소속 회원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주요 사례>

- 가.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
- 나.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, 어음대체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다.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(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라.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(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)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등.

붙임 : 「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」 설치현황 1부. 끝